

---

第111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環境水資源委員會會議錄 第5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

日時 1999年3月2日(火) 午後4時

場所 環境水資源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自然環境保全條例案
  2. 서울特別市大氣汚染物質排出許容基準條例案
- 

審査된案件

1. 서울特別市自然環境保全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2面
  2. 서울特別市大氣汚染物質排出許容基準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44面
- 

(16時 10分 開議)

○委員長 金鍾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臨時會 제5차 環境水資源委員會를 개의 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존경하는 先輩·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都明正 環境管理室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 3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서울시 정도 그 동안 준비하였던 사업들을 하나하나 차질 없이 시행에 박차를 가해 나갈 시기입니다. 執行部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첫 단추를 끼우듯이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신중한 자세로 풀어 나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1. 서울特別市自然環境保全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委員長 金鍾來; 의사일정 제1항 서울特別市自然環境保全條例案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그러면 먼저 環境管理室長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環境管理室長 都明正입니다.

서울特別市自然環境保全條例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自然環境保全法이 1991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地方政府의 기능이나 역할이 그 법에서 소홀히 다루어져서 자연환경이 제대로 보전되지 못한 느낌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97년 8월에 이 법이 개정되어서 자연환경 보전에 관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市·道 條例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自然環境保全法에 근거해서 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자연환경 보전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自然環境保全條例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자문이나 또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서, 중요한 내용은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목표 및 시책방향, 자연환경의 현황 및 이용실태, 또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사업 및 그 추진방안, 자연보호운동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다음은 서울시에서 자생하고 있는 동·식물 중에서 멸종

위기에 있거나 개체수가 감소하는 동·식물 등을 야생동·식물로 지정해서 보호할 수 있는 야생동·식물의 지정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지정방법은 市長이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포획이나 채취, 이식, 가공, 유통, 수출, 반출 등을 금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보전지역을 지정관리하고 또 이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지정대상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는 산림지역이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또 희귀동·식물의 서식지역 등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과 특별보호가 필요한 식물군락 분포지, 자연습지, 그리고 야생동·식물이 집단으로 서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環境部長官의 승인을 받아서 市長이 고시하도록 그렇게 해서 보호방법은, 야생동·식물을 포획·이식하거나 훼손·고사시키는 행위, 또 포획·고사를 위해서 화약류나 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 또는 주입하는 행위, 그리고 하천, 호소 등의 구조변경이나 수위·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토석채취·수면매립 또는 불을 놓는 행위 등을 제한하고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며, 또 행위제한이나 출입제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 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위반자에 대한 조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 조사의 실시 및 생태·자연도의 작성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자연환경에 대해서는 매 10년마다, 그리고 한강 및 주요산림 등 특별지역은 5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

다.

조사대상은 지형, 지질, 자연경관, 토양, 동·식물 서식상황 등이 되고, 이 조사를 근거로 해서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작성방법은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실선으로 등급구분에 따라 작성을 하도록 하고, 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 그리고 별도관리지역으로 구분해서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성된 자료는 지리정보체계를 이용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모든 개발계획의 검토기준이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 휴식지를 지정·관리하는 규정을 두고, 자연환경의 보전에 대해서는 별도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며, 기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해서 市長이 수행하여야 하는 생태도시의 조성, 녹지의 총량관리, 공공시설의 녹화, 자연형 하천정비, 자연생태계의 복원, 자연보호운동의 활성화 방안, 자연환경보전에의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行政規制基本法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 조례의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32조 등 규제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5년간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다만 존속기한 도래 6개월 전까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아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市 자체에서 조례 제정 전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 규정을 삽입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鍾來; 이어서 專門委員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南中; 專門委員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報告)

서울特別市自然環境保全條例案 檢討報告書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金鍾來;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朴來雨 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來雨 委員; 朴來雨 委員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自然環境保全條例案인데요. 최근에 中央政府에서 그린벨트를 풀어 준다고 하는데 그것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그린벨트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린벨트가 해제됨에 따라서 그 지역과 인근지역에 부정적인 영향, 말하자면 무질서한 개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현재 都市計劃局이 중심이 돼서 그린벨트가 해제될 경우 그 지역을 포함한 인근지역을 어떻게 도시계획적으로 정비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

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해제에 필요한 政府 지침이 7월초까지 시달되도록 되어 있어서 아직 기준도 확실히 알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朴來雨 委員;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鍾來; 李成浩 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成浩 委員; 李成浩 委員입니다.

그 동안 1년 가까이 이것 준비해 오셨지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네, 그렇습니다.

○李成浩 委員;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조례적용 대상범위가 서울시 관할로만, 시계 내로만 되어 있는 것이지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네, 그렇습니다.

○李成浩 委員; 그러면 여기에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될 곳에 대한 조사는 사전에 되어 있습니까?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현재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조사한 곳이 4군데 정도 있습니다.

첫째는 관악산과 북한산에 서식하는 희귀식물의 군락지를 두세 군데 발견을 한 연구용역조사결과보고서가 지난해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밤섬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방금 말씀드린 이 연구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정에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成浩 委員; 지금 관악산, 북한산 희귀식물군락지하고 밤섬까지지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네, 그렇습니다.

○李成浩 委員; 그리고 여기 조례에 따른 지도입니까? 자연환경보전계획 수립하면서 10년마다 새로 조사해서 생태도면이라고 그러나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네, 생태자연도.

○李成浩 委員;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면서 또 필요한 곳이 있으면 추가로 지역을 지정할 것이고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네, 그렇습니다.

○李成浩 委員; 보전지역을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네.

○李成浩 委員; 그러면 여기 自然公園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文化財保護法에 의한 문화재는 自然公園法 또는 文化財保護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립공원인 경우는 북한산은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계는 서울시내라 하더라도?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네,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成浩 委員; 그러면 自然公園法하고 국립공원은 그것이 무슨 법이지요?

自然公園法하고 都市公園法 2개 있습니까?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네, 2개인데 自然公園法은 북한산의 경우에 한해서 自然公園法의 적용받도록 되어 있고, 지난번 보고 한번 드렸습시다만 나머지는 근린공원 또 서울지역내에 있는.....

○李成浩 委員; 그러니까 여러 조항이 나오는데 이런 조항이 自然公園法, 그리고 都市公園法 같이 기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생태계보전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을 정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自然公園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文化財保護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自然公園法 또는 文化財保護法이 정하는 법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내가 自然公園法과 都市公園法이 같이 적용되는 구역이 있으니깐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얘기입니다만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李成浩 委員; 그리고 생태·자연도 이것 만들려면 꽤 오랜 시간과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준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저희들이 미처 체계적으로 준비를 못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都市計劃局에서 생태팀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시계획생태관련팀에서 금년에 5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생태를 조사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을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거기에서 조사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과제에 포함할 수 있는 부분까지 지역을 포함해서 생태·자연도를 작성할 수 있는 기초조사를 일부밖에 안 되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都市計劃局하고 협의되었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그렇게 알고 계획지침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李成浩 委員; 그리고 여기 생태자연도 작성을 1/25000 이상의 지도에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생태·자연도가 필요한 지역을 합니까? 서울시 전체 전도를 대상으로.....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전도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체를 다 합니다.

○李成浩 委員; 그러면 전도를 가지고 도면이 의미가 있을까요? 서울시계 구역내를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생태·자연도가 구체적으로 필요한 곳은 일부 국한된 구역만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고요. 그럴 경우에 1/25000 정도는 축척이 너무 배율이 높다고 해야 하나요, 낮다고 해야 그러나요? 하여튼 안 맞을 것 같거든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 실시계획을 할 때 대개 지적고지도면이 1/25000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自然環境保全法에는 1/500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다 더 낮추어서 예를 들어서 1/5000이라든가 1/1200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한다면 물론 더 바람직하겠습시다만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고, 또 1/25000 정도의 배율을 가지고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전체를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심지역부터 필요한 구역을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개발의 여지가 전혀 없는 자연공원 같은 것은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지 작성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李成浩 委員; 예산문제가 아니고요, 생태·자연도의 실효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기본도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李成浩 委員; 전체적인 기본도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그 다음에 매 10년마다 한번씩 변경 작성을 할 때 그 때는 시내 시가지 지역과 필요한 지역,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李成浩 委員; 하여튼 제가 볼 때 서울시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생태·자연도를 작성하고, 또 특징을 대상으로 한 생태·자연도는 별도로 있어야 되겠고요. 예를 들면 생태계보전지역의 경우는 그와 관련한 상세한 도면이 있어야 될 것처럼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서울시 하천에 대한 생태도면을 작성해야 된다는 얘기가 여러 시민단체로부터 꾸준히 있어 왔던 얘기인데 생태·자연도의 작성과정에서 이런 각각의 것들에 대한 기술은 전혀 없거든요, 조례상에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한 것인지 여부도 불투명하고, 그런 것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1/25000 이상의 지도라고 했기는 했지만 그 각각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술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아주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조례로 일일이 다 명기하기가 어렵고, 또 그 세부적인 사안은 규칙을 제정할 때 포함해서 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황을 작성하고, 앞으로 어떤 것을 자연형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개별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하천의 호안은 전부 다 시멘트

로 호안블록을 만들 것이 아니라 돌망태로 한다든가, 자연형으로 말이지요,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은 개별 하천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구상을 해서 사업추진과정에서 반영을 해야지, 이런 조례에 반영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李成浩 委員; 조례에 다 기술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생태·자연도가 어디까지 무엇을 말하는지를 조례를 심의하면서도 정확하게 그 개념을 파악하기가 곤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함께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천생태도면까지도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면서 나오게 된 도면인지, 지금 이것이 기본적으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금 목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네, 그렇습니다.

○李成浩 委員; 그런데 자연환경일 경우에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할 텐데 생태·자연도가 지금 어느 정도 선까지를 지금 구상하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전달을 못 받겠거든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아까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지형관계, 지질관계, 토양, 토지이용도, 그리고 생물종의 분포현황, 그리고 임상관계, 또 동식물의 분포, 그 외에 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가 국토이용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계획 이런 것들을 전부 표시하는 현황도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리고 하천정비에 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별사업으로 정비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을 하는데 금년에는 6개 하천에 6억원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李成浩 委員; 그 얘기는 다른 얘기고요. 그러니까 하천생태

도 하면 각 하천마다 수질 등급도 그렇고, 서식하는 동식물도 그렇고, 그것을 죽 다 적어 놓고 기록하는 도면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데까지 포함하는 생태·자연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이 지금 생태·자연도를 잘 만들면 환경적으로 굉장한 성과와 업적이고, 또 활용가치가 있는 것이 될 것이고요. 또 그저 그렇게 되면 불필요한 도면도 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環境管理室에서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을 텐데 최소한 이런 환경보전조례를 만들면서 서울시생태·자연도를 만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활용가치를 가지는 어떤 성격의 생태·자연도가 나올 것이다라는 판단은 적어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 때문에 계속 질의를 드린 것인데 아직 무엇인가 정확하게 준비가 안 된 것인지, 이후 작업을 추진하면서 판단해야 될 성격인지 몰라도.....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기본적인 개념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물종의 분포라든가 이런 것까지 모두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작성되면 나중에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그 개발계획으로 인해서 자연생태계가 어느 정도 훼손될 것이냐 하는 것이 당장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개발계획을 축소시키거나 보완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대응자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李成浩 委員;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생태·자연도를 잘 작성하고, 그 다음에 생태계 보전지역을 몇 군데밖에 국한되지 않은 것이니까 잘 관리하는 것이고, 나머지 휴식지 지정관리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연하천 정비는 별도의 문제인 것 같고요. 아까 室長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자연하천 정비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네.

○李成浩 委員; 하천생태계를 조사해서 환경지도를 만드는 과정은 다른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은 하셨습니다만, 지금 서울市の 생태·자연도를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구체적으로 못 받아서 앞으로 조례를 선언적인 의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는 조례를 만들려면 시행과정에서 環境管理室은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노력 부탁드립니다.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네, 고맙습니다.

○委員長 金鍾來; 네, 金寬洙 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寬洙 委員; 우리 專門委員 검토보고에 나와 있듯이 지금 李成浩委員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모법이 제정된 이후 8년이 지난 시점에도 中央政府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선언적 의미에 치중한 외국법 모방추세의 실례로 생각한다는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그 지적이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金寬洙 委員; 그래서 바로 지금 여기 우리 室長께서 제안설명하신 것도 보면 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관리 및 행위제한 등, 우선 그것을 질의하기 전에 북한산·관악산입니까, 서울시계 안에 있는 것이?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둘 다 서울시계 안에 있습니다.

○金寬洙 委員; 아까 네 군데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북한산도 있고 관악산도 있습니다.

○金寬洙 委員; 그러면 북한산도 산자락을 잘라서 서울시계에

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접한 京畿道와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네.

○金寬洙 委員; 그것은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거기에 금을 긋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행정관할구역 내에만 우리의 권한이 미치지 때문에 그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京畿道에서 관할해야 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북한산이나 관악산 안에 희귀식물의 군락지, 분포지는 걸쳐 있지 아니하고 지금 조사된 바에 의하면, 지난해 용역을 주었는데 우리 시계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金寬洙 委員; 용역을 주었다면 전체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계 내에만 한 것입니까?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우리 시계 내에만 했습니다.

○金寬洙 委員;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다른 행정도 마찬가지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모법이 自然環境保全法 아닙니까? 그 모법 테두리 안에서 서로 협의를 거쳐서 시계나 도계 경계를 해 놓고 이것은 같이 팀웍을 이루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서울시만 떨어져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관악산이면 京畿道와 공조체제를 갖추면서 조례를 제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굳이 공조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조례를 만들 때까지는 못 느꼈습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97년에 개정된 법에 의해서 市·道 조례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런 것이 없어서 7·8년간 中央政府에 맡겨 두었는데 이번에 京畿道에서도 이

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金寬洙 委員;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環境管理室長 개인의 생각이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기왕에 하는 것, 그것이 무슨 협의해서 탈 날 것도 아니고 공통적으로 조례를 내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나름대로 사무절차를 줄인다고 할까, 업무의 효율을 가져오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여기 선언적 의미라고 생각하는 것이 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관리 및 행위제한 등 해서 지정대상,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는 산림지역,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희귀동·식물 서식지역 등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특별보호가 필요한 식물군락 분포지, 자연습지 등 관리아생동·식물이 집단으로 서식하는 지역, 이런 조항으로 볼 때 저도 등산을 많이 갑니다. 여기 다른 同僚委員이나 關係公務員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는 산림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산이나 관악산이?

바로 이런 것들이 선언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그것은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할 대상지역을 선정할 때 그런 기준에 적합한 지역을 정한다는 뜻이고요. 지금 북한산이나 관악산이 전반적으로 그 기준에 다 적합해서 원시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金寬洙 委員;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선언적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지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하나의 지정기준입니다.

○金寬洙 委員; 글썄, 지정기준을 누가 모릅니까? 지정대상 네 곳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 기준에 해당되는 곳이 하나

도 없는 것 같아요.

특별보호가 필요한 식물분포지, 자연습지, 예를 들면 이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조례안을 잘해 보시겠다고 내신 것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실질적인 행정을 하고 능률 있는 행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同僚委員이신 李成浩 委員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1년 여 기간을 걸쳐서 공무원들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언적인 의미로, 물론 생태도나 이런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조례안이 정말 실질적이고 치밀한 계획하에 능률적인 그러한 안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한 가지만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관악산에도 끈끈이주걱 자생지라든가, 수락산에 고란초 자생지 이런 법정보호 식물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큰 면적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조사연구한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조례에 두어서 市長이 지정고시를 함으로써 이것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틀을 만들 수 있고, 그것을 위반했을 때 여러 가지 제재도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보다 더 많은 지역을 조사를 아직 못했습니다만, 이 조사한 내용을 우리가 지정관리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金寬洙 委員;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조례가 없으면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까? 조례는 지방자치가 실무적으로 원활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법이 엄연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그래서 법에서 위임한 규정을 저희가 만드는 것입니다.

○金寬洙 委員;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는 것보다는 한 두 가지를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더 실질적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례안 하나를 議會에서 논하더라도 關係公務員께서 정말 심도 있고 능률적인 안이 나왔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鍾來; 네, 金恩京 委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恩京 委員; 앞에서 여러 委員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여러 委員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이것이 부족하다 이런 것보다 어떻게 하면 좀더 확실하게 보전대책을 세울 수 있느냐 하는 점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있는 법이나 조례에다가 서울市가 環境保全條例를 추가로 만들게 되면 행정절차나 이런 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택지나 도로를 건설할 때 自然環境保全條例가 생기면서 어떤 절차가 추가되고 어떤 내용이 추가로 더 보호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자연공원 내에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할 텐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 조례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것이 생김으로써 시설설치 절차가 더 복잡해 지는지, 규제가 더 강화되

는지 이런 내용과 하천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계획,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이 절차에 따라서 사전에 검토를 받거나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 들어 있어서 강화가 되는지,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해가 근본적으로 부족한 부분인 것 같아서 여쭙어 보겠습니다.

서울市에서 녹지가 전체적으로 있지요? 그 녹지 중에서 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예를 들어서 시설녹지 같은 것은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도로폭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만, 10m·20m에 따라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녹지보전이라는 차원보다는 시설.....

○金恩京 委員; 室長님,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요. 시설녹지는 알겠습니다.

녹지부분이 시설녹지,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곳, 그 다음에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지역으로 규제되지 않은 녹지도 있습니까?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이 아닌 녹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金恩京 委員; 공원이 아닌 일반녹지도 있을 수 있는 거지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네, 있습니다.

○金恩京 委員; 그러면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자연녹지 중에서 생태보전지구를 지정하는 거잖아요, 대개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네, 그렇습니다.

○金恩京 委員; 그러니까 전체 녹지 중 자연녹지 중에서 생태

보전지구를 집어넣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생태보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럴 경우에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인지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우선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예시적으로 나와 있는 요건에 적합하다고 하면 그것이 자연공원의 녹지든 일반녹지 등 관계 없이 그 부분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규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다른 관련법에 직접적인 규정이 있고, 自然環境保全法은 어느 면에서 아까 金寬洙 委員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선언적 의미가 많습니다.

그런데 생태·자연도를 작성하게 되면 여러 가지 택지나 도로건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자연생태가 어떻게 훼손을 받느냐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른 環境影響評價法이라든가 다른 법에 의한 규제를 할 때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반드시 이 법에 의해서 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金恩京 委員;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야말로 선언적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조금 우려되는 것이 예를 들면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오히려 생태문제를 등한시하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약간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지역은 전부 생태지역으로 묶어 놓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생태적인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오히려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더 쉽게 되어버리거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아까도 대상을 여쭙어 보았더니 4개 지역이다, 대개의 경우 4개의 지역정도로.....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지금까지 조사된 것만.....

○金恩京 委員; 네, 그렇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까지 녹지를 둘러싸고 시민들과 허가권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있었던 지역들은 사실 이런 지역이 아닙니다. 북한산이나 관악산이나 이런 지역은 다툼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기존의 自然公園法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 녹지문제에 있어서 개발과 상충되는 지역들은 그 이외의 지역들이 많습니다. 도시공원에 시설을 설치하든, 아니면 도로나 택지를 개발하든 그런 지역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지, 그 이외의 지역들은 사실 북한산이나 이런 곳에 생태보전지구를 하지 않더라도 自然公園法에 의해서 다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식물종을 조금 더 세심하게 보존할 수 있다든가, 동물종에 대한 것을. 이런 추가적인 의미는 있는데 다른 것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더 개념을 넓혀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들을 새로 조사해서 지역들에 대한 방어선을 친다든가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이것이 거의 선언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더욱이나.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네, 맞습니다. 지금 법 규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로서 이제 말씀하신 것들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거나, 또 그런 어떤 조례로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상위법에 위임받은 부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태·자연도를 시내 전 지역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고, 다 도면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지역에 대해서는 5년에 한번씩 합니다.

그러면 그 생태·자연도에 의해서 생태자연계의 변화추이가 나타나고, 그렇게 되면 다른 각종 아까 풍치지구에 대한 형질 변경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른 都市計画法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할 때의 하나의 충분한 기준이 되어서 自然環境保全條例라든가 보전법의 정신을 살려서 거기의 심의기준이 되어야 되고,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바로 이 법에 의해서 규제를 못하고 있는 것이 저로서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만.....

○金恩京 委員; 室長님 설명해 주시는 것은 이해하거든요.

거기에 조금만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아까 특별지역에 대해서는 5년마다 하겠지만,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규정이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金恩京 委員; 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 조례내용에 들어 있는데 그러면 특별지역을 어디로 설정할 것이냐 이 문제가 되면 역시 아까 제가 지적한 부분과 또 닿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지역이 일반적으로 도로나 택지로 되어 버릴 개연성이 있는 일반녹지부분을 특별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특히 동식물 생태보전가치가 있는 종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특별보전을 하겠다, 그 지역을 특별지역으로 한다면 그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또 하나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상위법에 위임받은 항목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조금 더 서울시가 진취적이었으면 하고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기보전 쪽에서도 서울시가 더 강화된 기준을 내놓은 것처럼 녹지문제도 또한 똑 같습니다. 환경문제로서 다른 市·道들이 접하고 있는 녹지문제에 비해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녹지문제는 훨씬 더 절박하고 심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것들에 더 강화된 내용을 저는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례를 읽다 보면 제2조부터 사실 저는 마음에 많이 걸려요.

예를 들어서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기본원칙에 대한 제2조 제1항을 보면 자연은 공익에 적합하고,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전 관리되어야 된다. 공익에 적합하고, 이 말 자체가 사실 많은 개발을 전제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두번째 보시면 도시개발은 자연환경의 보전과 조화·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의 개발은 자연환경과 자연환경의 보전을 우선 해야 된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자연환경이 개발과 조화·균형을 이루는 것이 보통 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이런 문구가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가 당면하고 있는 녹지문제는 이렇지는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왕 조례를 만드시는 것이고, 사실 환경분야에 있어서는 어디나 지방자치가 더 강한 기준을 갖는 것이고, 서울

시도 지금 시도를 하고 계십니다, 부분적으로. 그런 입장에서 조금 더 넓혀서, 지금 안 그래도 다른 법으로 보호되고 있는 지역에 추가적인 어떤 의미를 하는 것보다 지금 그런 데에서 배제되고 있는 지역이면서 녹지가 훼손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고려를 조금 더 넣고 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네, 좋습니다. 저희가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것 좋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기환경보전을 위해서 좀더 진취적이고 강화된 규정을 이번 조례로 내놓았습시다만, 이런 것들이 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내놓았는데 이 경우에는 법에 더 강화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습니다만, 이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수정해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金鍾來; 室長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地方自治法에 보면 옛날에는 위임된 사항만이었는데 지금 위임되지 않았더라도 상위법에 위배만 되지 않으면 우리 조례로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규제가 뒤따를 경우에 벌칙을 마련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제 金恩京 委員님께서 환경보전의 기본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 원칙론에 대해서는 저도 환경을 더 우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만들 때 이것도 우리가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아직까지 현 수준이 이렇게 조화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런

애기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金鍾來; 金在實 委員님.

○金在實 委員; 金在實 委員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개발을 우선 할 것이냐, 또는 자연보호가 우선이냐 하는 점에서는 어떤 것을 우선해야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인간생활의 편리성과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에 대해서 어떤 것을 우선을 두어야 될 것이냐는 데 대해서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저도 무엇을 우선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데 대해서는 참 명쾌한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안이 선언적이고 상징적 의미밖에 내포할 수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라도 상징적이거나 이런 조례가 나오게 된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례안을 보면 노력해야 한다, 또는 무슨 요청할 수 있다, 무엇 할 수 있다, 어떤 강제규정이 아니라 그냥 임의규정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런 문구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꼭 그 문구를 안 써도 될, 문안을 없애도 될 문구도 종종 나오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제23조제2항을 보면 관리청은 복개,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인공화된 하천의 경우에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관리청에서 복개,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때는 우리 생활의 편리성에 중점을 두고 이런 것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인공화된 하천의 경우에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화되도록 노력하여

야 된다.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상징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무시해도 되는 것이고, 복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놔둔 인공구조물도 자연하천으로 복원시킨다 하는 뜻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더 이런 반론을 제시하시겠지요. 복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도 생각하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항은 의미가 없는 항이다, 무의미한 항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상징적이고 선언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로 안 써도 될, 써도 상관없겠지만 안 써도 될 이런 것들이 들어 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아예 2번항 같은 것은 없애는 것이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입니다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선언적인 규정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선언적인 규정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시장이 발의를 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포하는 조례이고, 또 하천의 정비책임은 어디까지나 최종적으로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언적이라 하더라도 일단 조례로서 공포가 되면 이 규정에 의해서 선언적인 의미를 실천해야 될 의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벌칙이 없다는 것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규정을 시장이 발의를 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 설치하는 하천은 물론이고, 1항은 새로 설치하는 하천을 가리키는 것이고, 2항은 기존 하천 중에서 정비를 할 경우에 해당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복개된 하천도 우리가 다시 정비를 할 경우에는 그런 복개구조물을 없애고, 자연형으로 전환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을 강조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런 규정은 두는 것이 부담을 지우는 뜻에서 좋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金在實 委員; 그런데 2항을 보면 지금 고철 경우라든가, 개조할 경우라는 문구는 전혀 안 들어 있고, 설치된 인공구조물 자체를.....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복원되도록 하는 말이 그것을 없애고 다시 자연형으로 복원한다는 얘기니까요.

○金在實 委員; 그렇게 들리는 것이지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그러니까 개조할 때라는 의미가 들어 있는 것이지요.

○金在實 委員; 개조할 때라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있는 것을 바꾸자는 뜻이지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네, 바꾸자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개수하자는 얘기지요.

○金在實 委員; 그러니까 멀쩡하게 다리가 지금 복개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천 제1유수지 같은 경우에는 복개가 다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복개되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을 가능한 한 뜯어서 원래대로 원위치시켜라,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네, 맞습니다.

○金在實 委員; 그래서 되겠느냐는 얘기에요?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그러니까 그것을 모두다 뜯어고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원칙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필요할 경우에 다시 정비를 이렇게 한다는

의미지요. 그것 되어 있는 것을 뜯어고치라는 것은 아니지요.

○金在實 委員; 그런데 정비를 할 경우에 라는 단어가 들어 있다면 室長님 말씀이 맞는데 그런 단어는 없고.....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규정은 아니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노력하여야 한 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金在實 委員; 아무리 조례가 상징적이고 선언적이라 하지만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는 얘기에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조문수정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조문수정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저는 취지만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金在實 委員;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이 되는데 제23조제2항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엉터리예요. 당연히 현재 쓰고 있는 것 필요해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을 뜯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뜯는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개·보수할 때라든가 그렇게 할 경우에는 한 다든지, 지금 제1항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만들 때에는 그런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좋은데 제2항에서 보면 당연히 복개를 하고 인공구조물을 설치했을 때에는 그것이 필요해서 해 놨을 텐데 자연하천형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잘못되어 있고, 너무 상징적이고, 이 조례가 정말 상징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노출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室長님이나 關係公務員께서는 여기에 어떤 문구를 삽입시켜서 개·보수할 경우에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넣도록 하고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알겠습니다.

○金在實 委員;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제1항을 보니까 자연환경은 공익에 적합하고 자연친화적이며,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 다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라요. 지속가능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전·관리되어야 한다.

어떤 문구를 따 와서 이렇게 붙여 놓았는지, 안 그러면 머리 좋은신 담당자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저도 보통사람인데 다 읽고 나면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것이 어떤 뜻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죄송합니다. 용어가 저도 사실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자문을 받을 때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환경분야에 있어서 일반적인 대원칙이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나 하면 일단 환경이 오염되어서 그 결과 예를 들어서 산림자원이나 이런 환경이 다시 재생하지 못하고 그대로 훼손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다시 재생이 돼서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이용할 수 있는 체제로, 방향으로 환경은 보전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UN에서 지속가능한 사회 이런 표현을 선언에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학자들이 이런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넣었는데 이것을 번역해서 적절하게 표현하는 용어가 없어서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설명도 제가 어려워서 잘 안 된 것 같습니다만, 그런 뜻으로 썼습니다.

○金在實 委員;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영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저는 얼른 室長님

의 설명을 듣기 전에도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말한 것과 室長님의 생각이 다르면 말씀을 해 주세요.

자연환경은 공익적이고 환경친화적이며 지속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전·관리되어야 한다. 이것하고 틀립니까, 말이?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金在實 委員; 크게 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 틀려야지요. 자연환경은 공익적이고 자연친화적이며 지속이용이 가능토록 보전·관리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전·관리되어야 한다. 이것은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의미가 틀리지 않습니다.

○金恩京 委員; 그러니까 지금 金在實 委員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다른 견해가 있는데요.

지금 이 조례는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한 개발을 원활하게 해 주는 조례가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환경이라는 것이 편리함을 다 추구하고 나서 나머지로 보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가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23조제2항 같은 경우 金在實 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室長님 답변하신 것은 이 조례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어긋나는 것은 아니고요. 새로 생긴 용어이기 때문에.....

○金恩京 委員; 선언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사실은 서울시가 올해 이 예산을 배정해 놓고 있지요? 홍제천과 난지천 일대.....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네, 홍제천은 기존 시설을 없애는 것입니다.

○金恩京 委員; 그것도 자연형으로 복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 지금 시멘트 블록으로 호안을 쌓은 것을 다 철거할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처음에 할 때에는 치수의 편리함이나 관리의 편리함을 위해서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라면 환경을 보전할 수 없다, 그런 문제 때문에 자연형 하천으로 다시 복원한다는 뜻입니다.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그렇습니다.

○金恩京 委員; 그것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자연 환경을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지금 環境管理室에서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 이미 市長이 공표한 사항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하천을 자연형으로 복원하겠습니다. 올해 우선 2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市長님이 이야기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복개문제는 어떠냐 하면 지속가능성을 보자면 하천을 복개하면 하천은 죽습니다. 하천은 살아 있지 않습니다. 해도 비치지 않고 모든 것이 발산되지도 않고 정화되지 않기 때문에 하천은 죽습니다. 이것은 지속가능한 개발이 아니라는 거지요. 왜냐 하면 미래의 세대가 그 하천을 하천으로서, 또는 냇가를 냇가로서 쓸 수 있어야만 지속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환경적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복개된 하천을 다 뜯었습니다. 거기에 편익이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를 못한다는 이야기는 성립이 안 되는 것이고, 거기가 편익이 있어서 복개를 했지만 이미 자연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그 편익을 포기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다 뜯어 냈고, 市長이 이번에 우리도 그것을 뜯겠습니다라고 천명한 것

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미 되어 있는 것은 그 편리함을 위해서 부분적으로만 다른 방법이 있을 때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지금 환경보전조례를 만드는 것과는 위배되는 것입니다.

지금 가치문제가 사실은 지금까지 경제적인면 위주로 모든 의사결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바꾸는 것이 여러 가지 저항에 걸릴 테고 環境管理室長님 입장이 어려워서 그것을 설득해 내야 되는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면서 그렇게 설득을 못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속 가능성과 지속적인 이용과는 다르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저는 그대로 명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鍾來; 다른 委員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金判吉 委員님 질의해 주세요.

○金判吉 委員; 自然環境保全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셨는데 이 안에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네요.

지금 區廳에 가면 환경보전위원회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서울에 북한산·관악산.....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환경보전위원회는 이 조례 말고 환경보전기본조례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金判吉 委員; 이것하고는 관계없습니까?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전혀 관계없습니다.

○金判吉 委員; 그러면 북한산이나 관악산에 지정된 야생 동·식물의 종류 같은 것은 조사를 해 봤습니까?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과거에

산림 생태계 조사를 개별 산에다가 죽 해 왔습니다.

지금 8개 산을 조사를 해서 우선 북한산에 하나, 관악산에 하나 정도는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용역기관에서 제안을 했고요. 추가로 밤섬이 생태계 보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세 곳을 우선 실무적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지정을 하기 위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金判吉 委員; 그러면 보전지역이라면 북한산이나 관악산 전체를 말합니까, 아니면 일부를 말합니까?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지금 여기 나온 것은 500여평 되고요. 한 곳은 20여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기준에 적합한 지역, 예를 들어서 희귀 동·식물.....

○金判吉 委員; 동물이란면 상당히 지역이 넓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동물은 넓어야 되는데 아직 동물에 대해서는 예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식물의 군락지만 지금.....

○金判吉 委員; 그러면 室長님께서서는 동물이 어떤 종류가 있다고 보십니까?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동물은 지난번에 발표를 했습니다만, 도롱뇽, 참개구리 이런 동물들이 지난번 용역결과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조례가 통과되면 동물보호를 위해서도 별도 지정하는 문제를 다시 전문가를 통해서 검토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용역결과가 그렇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것을 지정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金判吉 委員; 그러면 뛰어다니는 동물은 해당이 안 됩니까?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뛰어다니는 동물이 포함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 전문가들이 관리대상으로 희귀 또는 멸종되어 가고 있는 종으로 2개를 조사했습니다.

○金判吉 委員; 그러니까 포괄적인 이야기만 해 놓았지 실제로 조사는 안 되었네요, 지역이랄지 종류랄지?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부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判吉 委員; 한라산의 노루를 보호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네.

○金判吉 委員; 그러면 식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식물은 지금 46종을 조사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끈끈이주걱이라고요. 사진이 뒤에 있습니다만, 고란초와 두 가지가 균락을 이루어서 자라고 있는데.....

○金判吉 委員; 끈끈이주걱과 고란초, 이렇게 두 가지만 균락을 이루어서 지정이 되었습니까?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지정이 안 되었지요. 지정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이것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지정절차를 밟습니다.

○金判吉 委員; 同僚委員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구체적이 아니라는 것을, 조문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이랄지 동·식물의 종류에 대해서도.....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기준만 명시를 하고 구체적인 것은 지정과정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金判吉 委員; 생태계 조사를 시켰다고 하니까 생태계 조사 결과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는

무엇을 보호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것도 나와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부분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만 총괄해서 자세한 것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委員長 金鍾來; 金鎬一 委員님 말씀하십시오.

○金鎬一 委員; 金鎬一 委員입니다.

自然環境保全條例案, 이것 環境企劃課에서 했지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네, 그렇습니다.

○金鎬一 委員; 環境企劃課에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28명입니다.

○金鎬一 委員; 그러면 環境企劃課는 분명 지금 環境保全條例案이 통과가 되면 28명이 여기에 다 투입되어서 일을 할 것입니까?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아닙니다. 담당하는 환경보전팀이 따로 있습니다.

○金鎬一 委員; 그 팀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팀장까지 5명입니다. 직원만은 4명입니다.

○金鎬一 委員; 自然環境保全法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자연환경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여 시민이 쾌적하고 살아 숨쉬는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 누가 왈가왈부하겠습니까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팀장을 포함해서 5분이 이것을 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앞서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장에 보면 관리 야생동·식물 및 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 이것만 해도 방대한 것입니다. 또 거기에 자연환경조사 및 생태·자연도의 작성, 자연자산의 관리, 자연보호운동 및 시민참여, 마지막으로 과태료도 있습니다만, 이 토지이용계획과 병행해서 자연환경보전을 실시한다 하는 얘기를 아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러다 보면 우리는 환경을 보전하는데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항도 때로는 규제 아닌 규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민이 느끼게 되면 이것이 과연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과연 팀장을 포함한 다섯 분이 방대한 지역을 어떻게 조사해서 더군다나 또 1/25000 지도에 상세하게 수록까지 한다고 했는데 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먼저 가져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그 다음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저희 환경파트의 인력이 구조조정 등으로 해서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조례의 기본 틀을 만들어 놓고 세부적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직원이 직접 이것을 조사를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 하면 우선 첫째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을 산에 가서 이 지역이 이 기준에 적합한지의 내용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이 전체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용역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산림생태계조사에 대한 용역과 한강생태계조사용역이 이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용역을 주려고 하고, 또 금년에 都市計劃局에서 5억을 들

여서 생태·자연도와 관련된 토지이용계획현황도 조사를 하고 해서 용역팀에서 하고, 저희들이 용역팀을 지도 감독하고, 그 결과 정리된 것을 관리를 하는 체제로 한다면 부족하나마 이 인력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鎬一 委員; 지금 우리 어떠한 일을 하나 추진해 나가려고 하면 용역회사에 주어서 하는 것이 상설화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회사에서 조사한 것이 과연 현장감과 기존과 조화를 이루는 조직이 되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나온 용역결과를 가지고 환경기획과 기획팀에서 그 내용을 보고 분석하고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거기서 해 온 것이 다 맞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일부 수정할 사항도 있고 하니까 그런 문제 하나하나를 잘 체크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네, 아주 옳은 지적이신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면 중간보고회를 가집니다. 중간보고회는 용역을 받은 업체에서 보고서를 갖고 와서 보고를 하면 우리 시의 관계부서의 팀장, 과장, 국장 또 관계전문가들을 별도로 초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파트의 생태전문가라든가, 환경보전전문위원회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그 용역보고를 듣고 그것을 평가하고, 지도를 하고 해서 용역방향을 보완한다거나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용역을 주고 과업을 처리할 때 중간보고회를 자주 열어서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金鎬一 委員; 그러다 보면 다섯 분 팀에서 이루어져서 하다

가 또 1·2년 되다 보면 자리바꿈을 합니다. 자리바꿈을 하는데 팀장을 위주로 한 분들이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괜찮은데 팀장이 옮겨가고 이러다 보면 공백사항이 생깁니다.

과거에 해 왔던 일들이 바로 그런 차원이었었는데 제가 하나 제22조에 보면 공공시설의 녹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공청사,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공시설의 옥상, 벽면 등을 적극적으로 녹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도 결국 규제사항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생태를 보전하자 하는 문제에서 남의 옥상까지 얘기하고, 벽면까지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나 좀 많은 관여를 하지 않나, 시민생활의 불편성을 갖지 않나 그런 얘기인데 공공청사라 하니까 시청이랄 수도 있고, 각 구청이라도 할 수 있고 그런 얘기를.....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네, 민간기관은 아닙니다.

○金鎬一 委員; 그러나 그것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것이 필요한가 아닌가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공공적인 사업을 하는 행정부서에서 과연 시민의 시각으로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제일 의아스럽고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이것도 벌칙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권장사항인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1000만그루 나무심기와 관련해서 시 산하 자치구, 사업소는 전부 회의를 해서 벌써 이런 것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간의 어떤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하고는 조금 달리 봐 주셔도 좋겠습니다.

○金鎬一 委員; 앞으로 自然環境保全條例案이 통과가 되면 오

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조례안을 상정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덧붙입니다만, 환경에 대한 문제는 강화되면 될수록 주민생활에는 더 좋지 않느냐,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鍾來 委員長, 金在實 幹事와 司會交代)

○委員長代理 金在實; 金恩京 委員님 말씀해 주십시오.

○金恩京 委員; 몇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일반 자연녹지의 보전방안에 대해서 보충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한 방안으로 제21조에 녹지 총량관리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너무나 구체적이지 않아서 총량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가 사실 잡히지 않습니다.

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에 일반 녹지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 들어 있거나 그렇다면 그것을 보완이 되거나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21조를 약간 더 세분화 하든지 해서 일반녹지나 이런 것들을 보전될 수 있는 조항이 여기 삽입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제23조제1항이, 아까 제23조제2항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23조제1항 부분이 여기에서 하천을 정비할 때는 이수와 치수에 지장이 없는 한, 이 문제가 사실 거의 이 문제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수와 치수에 지장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자연보전과 어떻게 병립할 수 있는지, 사전적인 보호조치를 하고 이수, 치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서는 사실 建設局하고 環境管理室하고 굉장히 의견을 잘 조율하셨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해서 저는 이 조항자체가 앞으로도 그런 여지를 남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하셔서 저는 개별적으로는 전에 건설기술연구원 쪽에서 하천의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놓은 것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수, 치수 때문에 하천정비를 한다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이수, 치수가 어려운 일자형 하천을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하천 정비해 놓은 것을 보면.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여기를 조금 정리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建設局에서 하천정비를 할 때 하천정비방법에 대해서는 環境管理室에서 한번 의논을 받든지,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 정도 여기다 넣어서 建設局 입장에서만 일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는 절차를 하나 두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2개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맨 앞에 제가 아까 제2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2조 제3항 맨 앞부분에 보호가치가 있는 자연경관과 야생동·식물 이렇게 했는데 보호가치가 있다라는 판단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보완을 하든지, 빼시든지 자구를 수정하셔서 보호치가 있다라는 것은 없다라고 누가 주장하면 어떻게 할 것이고, 기준이 무엇이고 이런 것이 참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상황에서 어떤 것이 보호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도 자구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在實 幹事, 金鍾來 委員長과 司會交代)

○委員長 金鍾來;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과 관련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特別市自然環境保全條例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7時 38分 會議中止)

(18時 05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鍾來;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정회 중에 여러 委員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李成浩 委員은 종합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成浩 委員; 네, 李成浩 委員입니다.

조례안 제2조제1호에 “자연환경은 공익에 적합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전·관리되어야 한다”를 “자연환경은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이용이 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로 하며, 제3호에 “보호가치가 있는 자연경관,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및 그 종 등은 보호되어야 한다.”를 보호가치가 있다 없다라는 논란

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보호가치가 있는을 뺀 “자연경관,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및 그 종 등은 보호되어야 한다.”로 하며, 조례안 제11조제1항 “自然公園法·文化財保護法”을 “自然公園法과 都市公園法 또는 文化財保護法”으로 하며, 제2항의 “自然公園法에 의하여 지정된”을 “自然公園法과 都市公園法에 의하여 지정된”으로 하며, “自然公園法 또는 文化財保護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自然公園法과 都市公園法 또는 文化財保護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각각 都市公園法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鍾來; 李成浩 委員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李成浩 委員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金恩京 委員; 이의 있습니다.

○委員長 金鍾來; 네, 말씀하십시오.

○金恩京 委員; 애초에 조정된 내용과 다른데요. 제2조제1항에 수정안이 뭐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연환경은 공익에 적합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李成浩 委員; 적합하게 보전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지속한 이용이 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에 적합하고 환경친화적이며로 된 것을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하고로 바뀐 것이고요. 마지막에 가능하도록 보전·관리되어야 한다는 보전을 빼고 관리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金恩京 委員; 저는 이것을 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들어왔네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모법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넣는 대신에 거기에 보전하고라고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때문에 제안하신 뜻이 살려진다 그렇게 이

야기가 돼서, 아까 專門委員이 설명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金恩京 委員; 그렇기도 한데 법에 공익에 적합하게라고 넣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지는 않지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규정에 그렇게 명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려서 거기에다가 보전이라는 표현을 넣음으로써 金委員께서 지적하신 취지는 살아난다, 그런 뜻이지요.

○金恩京 委員; 그러면 제가 길게 달지 않겠습니다, 거의 선언적인 문제여서. 제가 室長님께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하는 의미를 다짐받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익에 적합하게 자연환경을 보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공익이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 개념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지적한 말씀 중에 개발과 관련된 부분,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도 공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전하여야 한다는 그런 면에서는 이 보전이라는 개념이 환경보전의 일반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한다고 하면 환경 자체를 보전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金恩京 委員; 그리고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것을 빼셨네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안 뺐습니다.

○委員長 金鍾來; 다시 한 번 우리 李成浩 委員님 수정동의를 해 주십시오.

○李成浩 委員; 조례안 제2조제1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

명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은 공익에 적합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전·관리되어야 한다.”를 “자연환경은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이용이 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도 확인했습니다만, 법에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하고 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상에는 공익에 적합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전·관리하여야 한다면 전체를 같이 묶어버림으로써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하고로 들어감으로써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한다는 차원의 강조로 쓰여지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이 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면 기술함으로써 문제의식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金在實 委員; 여기서 공익이라는 것은 개인의 사사로운 것으로 이용될 수가 없고 모든 시민들의 공공적인 이익 차원에서 사용한다는 의미의 공익이거든요.

○委員長 金鍾來; 그리고 여기서 공익은 꼭 개발뿐만 아니라 방금 室長님께서도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자연적으로 보호하는 것도 공익입니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金恩京 委員; 보전이 공익이다라고 공언을 하셨으니까 그것을 믿고 동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鍾來; 그러면 재청이 있으므로 李成浩 委員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李成浩 委員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特別市自然環境保全條例案은 李成浩委員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서울特別市自然環境保全條例案

(뒤에 실음)

---

2. 서울特別市大氣汚染物質排出許容基準條例案(서울特別市長提出)

(18時 13分)

○委員長 金鍾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特別市大氣汚染物質排出許容基準條例案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環境管理室長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環境管理室長이 서울特別市大氣汚染物質排出許容基準條例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市에서는 그동안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해 오으로써 황산화물, 먼지 등의 오염물질은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존생성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은 아직 개선되고 있지 아니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 질소산화물에 대한 국가배출허용기준은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될 정도로 느슨해서 서울의 대기오염을 가중시

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질소산화물을 다량 배출하는 발전시설과 대형소각시설의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국가기준보다 엄격하게 설정함으로써 배출업소로 하여금 방지시설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서울의 대기질을 개선해서 서울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적인 근거는 大氣環境保全法 제8조제3항에 의해서 더 강화된 기준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설정안은 제2조에 규정했습니다만, 배출시설이 기존시설인 경우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설치준비를 위해서 시행시기를 2,000년과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2004년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조례 시행일부터 기존시설의 2004년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 입지단계에서부터 엄격하게 오염물질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또 시설규모별로 외국의 사례를 많이 참고해서 기준에 차등을 두어서 대기오염 배출량이 큰 시설은 작은 시설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대상시설별로 보면 기체연료사용, 발전용 내연기관의 경우에 국가기준은 500ppm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례안에 2000년 기준을 250ppm으로, 그리고 2004년의 기준을 100ppm으로 하고, 열병합발전소 및 공장 등에 설치된 발전시설의 경우에 국가기준은 400ppm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례안의 2000년의 기준은 규모별로 120 내지 150ppm으로 하고, 2004년 기준은 50 내지 100ppm으로 하였고, 자원회수시설 등이 설치된 소각시설의 국가기준은 200ppm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례안의 2000년 기준은 100ppm으로 하고, 2004년 기준은 80ppm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 조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인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鍾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南中; 검토의견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報告)

서울特別市大氣汚染物質排出許容基準條例案 檢討報告書

(뒤에 실음)

.....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金鍾來;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한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 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成浩 委員.

○李成浩 委員; 李成浩 委員입니다.

질소산화물 중에 80.8%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질소산화

물 저감대책은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입법예고기간에 울산에서 제출한 의견사항에도 그것이 중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답변은 지금 대책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이미 법이 규정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98년도에는 km당 0.40g 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0년에는 km당 0.25g으로 대폭 강화를 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해서 제작회사에서 여기에 맞추어 연도별로 제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법적으로 해결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李成浩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環境部에서 주관해서 자동차 신규제작시에 엔진의 배출가스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강화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네, 그렇습니다.

○李成浩 委員; 기존에 운행중인 차량에 대한 대책은 없고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운행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질소산화물에 대한 검사항목을 추가해서 그것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環境部에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李成浩 委員; 지금은 자동차배출가스.....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지금은 매연하고 아황산가스하고 일산화탄소하고 탄화수소 세 가지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李成浩 委員; 단속규정이 그 세 가지밖에 없어서 그렇습니까?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네.

○李成浩 委員; 기존에 운행중인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저감

대책은 질소산화물에 대해서 단속을 못했는데 단속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 기준은 기존에 차량제작시에 정해 놓은 기준 내지는 운행차량에 대한 기존의 규정을 가지고 단속을 하는 것인가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이것은 環境部에 지금 건의를 해서 단속항목으로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단속할 때의 검사방법이라든가 기준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건의를 한 것입니다.

○李成浩 委員; 그러니까 현재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는 단속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달라라고 했고,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면 방법과 그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울시에서 정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그것은 정부에서 정합니다, 기존 운행차에 대해서는.

○李成浩 委員; 그러면 어떻게든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도 다 정해서 내려 달라?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그렇게 건의를 이미 했다, 이것입니다.

○李成浩 委員; 그러면 이것은 環境部에서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럴 경우에는 서울시의 특수성을 반영하기가 곤란할 것 같은데 건의할 때 기본적인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고, 그 범위 내에서 강화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위임받거나 그래도 될 것 같은데.....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그것은 법적으로 지역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선 전국적인 기준이라도 우선 단속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고요.

이번에 자동차가 아닌 다른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아까 말

썸드린 大氣環境保全法 제8조제3항에 의해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마련한 것입니다.

○李成浩 委員; 지금은 그런 법이 없어서 추진 못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개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야 법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규정을 추가를 해 달라는 것이지요.

○李成浩 委員; 규정을 추가할 때 環境部에서 이렇게 기준과 방법을 다 정해 달라라고 요구할 수도 있지만 기준과 방법을 정해 주되 지방자치단체에서 좀더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李成浩 委員; 그럴 때만이 서울시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할 수가 있다 이것이지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자동차의 경우에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李成浩 委員; 그러니까 내연기관이 이미 발주되어서 운행중인 차량을 얼마만큼 저감할 수 있느냐 하는 기술적인 문제는 있을 것이지요.

그런데 저감대책을 강구한다고 할 때 신규제작하는 차량만큼의 저감효과를 볼 수는 없지만 기존에 운행하던 것도 일정 범위 내에서는 기술력에 따라서는 여지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본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든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주고, 시에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서울시가 워낙 밀집된 공간구조에 많은 차량들이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

은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가능성 여부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鍾來; 朴來雨 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來雨 委員; 지금 현재까지는 국가기준으로 했습니까?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네, 그렇습니다.

○朴來雨 委員; 그렇다면 국가기준보다 엄격하게 설정하여 대  
상배출업소로 하여금 방지시설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했는데  
지금 자원회수시설에 설치된 현재 기준이 얼마 하고 있습니  
까, 현재 국가기준으로 했을 때?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자원회수시설은 맨 아래 항목인데요.  
국가기준이 200ppm입니다.

○朴來雨 委員; 200ppm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얼마나 최소  
화되어 있는가?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지금은 우리 자원회수시설의 경우에  
는 방지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어서 100ppm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朴來雨 委員; 그렇다면 앞으로 자원회수시설은 80ppm으로  
했을 경우에 별도로 방지시설 할 필요가 없겠네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네.

○朴來雨 委員; 확실합니까?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네, 확실합니다.

○朴來雨 委員; 별도로 나중에 예산편성해서 올라올까 봐 걱  
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그것은 그 때 보시면 아실 것입니  
다, 그것은 맞습니다.

○朴來雨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鍾來; 더 질의하실 委員 계십니까?

金判吉 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判吉 委員;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李成浩 委員께서 구체적인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대기오염의 주범은 자동차 매연입니다. 서울시내 대기오염의 주범은 자동차매연인데 새로 제작되는 자동차는 국가가 환경부에서 지정한 시설을 갖추고 나오는데 기왕에 5년, 10년 된 자동차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물어 보셨지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네, 그렇습니다.

○金判吉 委員; 그 대답을 확실히 안하시네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신규제작차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어 있고, 지금 운행 중인 차에 대해서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매연에 대해서 세 가지 검사를 지금 기준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하고 있는데 다만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는 검사항목으로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환경부에 건의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건의를 했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金判吉 委員; 기왕에 운행된 자동차에서 매연이 많이 배출되는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어째서 새로 만든 차는 안 나오게 하는데 기왕에 나온 차는 많이 나오는가. 연료가 연소가 다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유를 때면 경유가 완전연소가 되면 안 나와요.

그래서 부란자라는 것이 있습니까? 힘을 많이 쓰기 위해서, 과속을 하기 위해서 부란자를 튼니다. 부란자에는 봉인되어 있는데 그 봉인을 뜯어요, 뜯으면 법에 위반입니다. 봉인을 뜯어서 돌려 놓아요. 그러면 밟으면 밟은 대로 차가 나갑니다. 그러면 기름이 많이 나오면서 다량 배출되면서 연소가 다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공해물질이 나오는 것이

고, 또 지금 봄이면 서울의 대기를 제일 오염시키는 것이 산동반도에서 불어오는 황사현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황사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황사대책은 우리 서울시가 세울 수 있는 것은 결국 근원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고, 정부에서 중국측하고 동북아시아권의 대기라는 것은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협약을 통해서 사전에 중국측으로부터 여러 가지 원인저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부의 소관사항으로서 현재 정부에서는 동북아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는 듣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진전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황사현상으로 인해서 나오는 먼지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도로의 물청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방법 외에는 별도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는 매우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매연 나오는 원인에 대해서는 아주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매연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金委員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까지 단속을 함께 하고, 과태료도 부과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鍾來; 金恩京 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恩京 委員; 하여간 좋은 條例 올려 주셔서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리고요.

지금 여기에 신규시설하고 기존시설의 보완 쪽하고 두 가지를 내주셨는데 앞으로 신규시설이 서울시내에 어느 정도 설치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떤 시설이 어떻게 설치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소각시설 외에는 이것이 전부 대형호

텔, 그리고 서울화력, 이런 것들인데요. 서울 당인리발전소는 2004년에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으로 2004년에 이전하는 뜻을 전달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형호텔이 어느 정도 들어설는지 예측하기 매우 어렵습니다만, 크게 늘어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金恩京 委員; 그렇지요. 결국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질 소산화물을 저감시켜야 한다면 그것은 기존 시설에 의해서 저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네, 그렇습니다.

○金恩京 委員; 그래서 사실은 새로 시행되는 것들은 조례 시행일부터 한다, 이렇게 해 놓으신 이유가 사실 대상이 없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소각시설의 경우는 워낙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해당이 없습니다. 문제는 기존 시설을 보완하는 것인데요. 專門委員도 검토보고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유예기간을 5년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제가 사전에 몇 가지 듣기로는 이렇게 하게 된 사유 자체가 우리 나라의 기술문제나 그렇지 않을 경우 로열티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서 실질적으로 우리 나라 기술로 될 때까지 어느 정도가 걸릴 것이냐 하는 것이 주 포인트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도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어차피 지금 소각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의 기술을 들여서 오염방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러한 경우에도 로열티나 기술문제를 이유로 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안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입장에서는 유예기간을 5년씩

이나 주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그것이 어쨌든 이 조례의 목적이 질소산화물의 오염을 낮추자는 것인데 우리가 왜 産業資源部도 아니고 産業經濟局도 아닌데 그 쪽에 치우쳐서 이것을 5년씩이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느냐 하는 점에 여전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기간을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室長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朴來雨 委員; 당인리발전소는 2004년 몇 월입니까?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9월이지요.

○朴來雨 委員; 2004년으로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우연하게도 당인리발전소 이전과 같은 해인데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그것도 감안을 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2004년에 이전하는 시설에 대해서 그 이전에 시행을 해서 투자를 한다면 불과 1·2년도 쓰지 않고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낭비 요인도 고려를 했습니다.

○朴來雨 委員; 그렇기 때문에 2004년으로 했다?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그런 면도 있고요. 아까 金恩京 委員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탈진시설에 대해서 국내에서 기술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돼서 시험기간을 거친다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2004년부터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이전에 한다면 외국기술이 들어와서 종속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현상이 있고, 또 현재 대부분의 경우에 국가기준보다는 반 이하로 딱 떨어져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金恩京 委員; 그래서 제가 室長님께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유예기간을 5년으로 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室長님은 사실 확정적으로 그렇게 될 경우 외국기술이 들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G7프로젝트에서 그것이 이미 연구중에 있고,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시작해서 기술개발을 하는 단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金恩京 委員;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만들어 두는 것 자체가 기업들의 기술투자를 촉진시키고, 기업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단축하는 노력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당인리발전소도 문제의 본질을 조금 벗어났다고 보는 것이 어쨌든 環境管理室 입장은 당인리화력발전소를 얼마나 잘 운영하느냐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질소산화물 문제, 서쪽에서 부는 것 때문에 동쪽으로 문제가 전이되는 오존문제 이런 것을 어떻게 방지하느냐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인리발전소가 이전하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정작 당인리발전소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신다면 제 입장에서는 그런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꼭 당인리가 아니더라도 폐쇄계획이 있는 곳은 예외규정을 두어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줄이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저의 제안입니다.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폐쇄계획이라는 것이 사실 적용을 예외로 해 주었다가 폐쇄가 안 되고 자연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당초

조례 제정한 것이나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것을 오히려 악용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도 되고요.

꼭 당인리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결정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했습니다만, 당인리발전소 이전을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안을 입안하면서 의견을 들어 보니까 물론 업계나 이런 데서는 반대를 했었죠. 그것보다도 市 자체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조례 자체를 원천적으로 제정 못하게 해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류를 당했던 것을 다시 전 위원을 상대로 설득작전을 펴고 해서 겨우 통과를 했는데 만약에 이것을 다시 조정을 하면 규제개혁위원회에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 가면 원천적으로 조례 자체가 어떻게 왔다갔다할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도 함께 있기 때문에, 요새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새로 생겨서.....

○金恩京 委員; 글썄, 서울시를 규제하고 있어요. 그것은 알겠는데요.

어려우셨으리라고 생각은 드는데 당인리 문제는 그래요. 2004년 1월 1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이전은 9월이란 말입니다, 폐쇄를 하거나. 그러면 2004년 1월 1일부터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2004년 9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치 아니겠습니까? 미리부터 예고가 되었기 때문에 당길 수 있는 거지요, 만약에 안 당기면 벌과금이 나가기 때문에.

○金恩京 委員;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외조항으로 폐쇄를 전제로 해서 두었다가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2004년까지 해 놓았다가 만약에 당인리발전소 이전 안하고 계속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똑같은 입장이지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결국 벌과금이 나가게 되지요.

○金恩京 委員; 똑같은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제가 정리를 하자면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서울의 대기오염이라는 전제를 두고 지금 우리가 외국기술 문제나 로열티 문제를 고려할만큼 대기질이냐, 그것보다는 서울시의 대기질 문제가 더 급해서 지금 어차피 소각시설도 외국기술을 도입해서 쓰고 있듯이 그것도 어느 정도는 그럴 수밖에 없더라도, 기업이나 이런 데서 좀 부담을 하더라도, 사실 이것은 기업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공해방지 비용으로 다 들이는 것입니다. 그것 이외에는 별로 없을 텐데 그렇게 하더라도 서울시의 대기질 개선에 우선 초점을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 조례를 지금 만들면서 2004년에 이것을 발효하게 하면 사실은 현 시장도 여기 없을 때입니다, 현 시장이 생색은 다 내고 있는데. 현 시장이 조례에 의한 어떠한 결과도 보지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2004년부터 시행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2001년 1월 1일부터 기존 시설의 경우에는 시행을 하는데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준도 현재 물론 이 시설에서 어느 정도 달성은 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연평균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최고치를 따지고 보면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더 강화된 기준으로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이것을 5년 후에 시행한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조레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金恩京 委員; 지금 보시면 2001년부터 하는 기준과 2004년부터 기준이 거의 배가 넘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폭이 큰 것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오존문제는 오존주의보 발령이 나갈 정도로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외국기술이나 로열티 문제를 먼저 고려할 사안이나, 環境管理室에서는 그런 시각으로 보느냐? 環境管理室에서는 질소산화물의 배출기준을 규제함에 있어서 기술도입 문제나 로열티 문제를 먼저 걱정하실 정도로 한가로우시냐? 그렇게 이것을 보시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저희들이 다른 조례안도 마찬가지로입니다만,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나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이것이 최적안이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된 이유가 그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로열티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해관계인이라든가,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이런 수준이면 적절하겠다 라는 판단이 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이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강화되었을 경우에 앞으로 다시 다른 중복적인 절차를 밟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우선 이 안대로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데, 의결이 되더라도 더 강화가 되면 다시 규제개혁위원회로 가게 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金恩京 委員; 사실 이 문제도 어떤 면에서는 서울시가 자초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금 굉장히 기업이나 서울시의 비용 문제를 걱정하고 계시지만 사실 그 문제는 어떻게 보면 기업이나 시설에다가 이중적인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열병합발전소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이것을 설치할 시점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탈진시설을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소산화물 문제를 같이 해 놓았으면 여기에 추가시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의 시설로 여러 가지 오염방지를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와서 질소산화물 문제를 다시 추가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를 고려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용이나 기간이나. 사실은 서울시가 대기정책을 굉장히 짧게 본 것입니다. 그 때 많은 제의가 있었지만 비용문제 이런 것으로 다 잘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委員님들과 의견을 나누어 봐야 되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대기오염 중에 질소산화물을 규제하는 것이지 기술심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로열티 문제를 심의하는 것도 아니라는 입장에서 저는 유예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여기 모든 의견을 수렴하셨다고 하지만 정말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곳의 의견은 한두 곳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이해관계자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조금 더 議會는 주민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鍾來; 네, 金鎬一 委員 질의해 주세요.

○金鎬一 委員; 지금 기존시설을 2000년 1월 1일부터 2003

년 12월 31일까지 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는 그전 기간보다는 많이 강화된 것으로 한다 하는 얘기는 金恩京 委員의 말씀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97년 현황을 보면 질소산화물의 배출실태가 97년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송이 85.7%, 난방 10.2%, 산업이 3.3%, 발전이 0.8%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수송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경유사용 시내버스의 천연가스 시내버스 대책 보급추진 해서 금년도에 15대를 시범운영 하겠다, 2002년에 가서는 2000대로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시지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金鎬一 委員; 그 동안에 작년 12월에 예산 때도 말이 있었 습니다만 경유버스에 한해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려다가 기술 개발된 회사가 단 하나이기 때문에 보류된 사항이 있지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네, 그것은 예산자체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金鎬一 委員;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시내에 버스 말고도 청소차량이라든지, 대형차량들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서울시 자치구의 청소차량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부착을 다 끝냈습니다.

○金鎬一 委員;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과연 그 효과가 극대화시킬 수 있었습니까?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저희들이 부착한 매연여과장치는 질소산화물까지 여과되는 장치가 아니고, 매연이 주로 여과되는

장치이기 때문에 그런 데 문제가 있다고 國會 環境委員會에서 지적이 되어서 그것이 유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년만큼은 크게 저감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金鎬一 委員; 그러나 질소산화물을 배출 안 되는 데 대해서는 저감효과가 없다 그래서 시내버스를 앞으로 천연가스로 대체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네.

○金鎬一 委員; 그러면 시작을 했습니까?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지금 진행은 3개 노선에 15대를 하려고 하는데 1개 노선에 5대씩, 2개 노선은 버스업체와 가스회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1개 노선만은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金鎬一 委員;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2개 회사라도 시험가동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빨리 나오겠지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아마 하반기 되어야 겨우 운행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버스제작기간, 충전소 제작기간, 설치기간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金鎬一 委員;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 조례안이 이번에 통과가 된다면 2000년 1월 1일부터는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것입니까?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하고 2004년 1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이 점점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보다도 한 1/2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 내년이고, 내년보다 한 1/2 떨어지는 것이 2004년이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金鎬一 委員; 단계적으로 강화되는데 그만큼 기술개발이 따라가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단계적으로 두었습니다.

내년에 적용되는 기준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金鎬一 委員; 앞으로 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서울시내가 한결 더 맑고 깨끗한 도시로 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네, 그렇습니다.

○金鎬一 委員; 대답은 참 잘 하십니다만 결과는 두고 봐야 되는데 여기도 지금 보면 대기보전과는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대기보전과는 매연가스 단속하는 요원이 40명이 있고, 행정 보는 직원은 24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金鎬一 委員; 24명인데 그것도 3개 계예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네, 그렇습니다.

○金鎬一 委員; 그러면 한 7·8명이 일을 하는데 단속하는 사람들은.....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별도로 있습니다.

○金鎬一 委員; 잘못된 것을 발견하는 것이지, 항상 우리는 잘못된 것을 발견했을 때 얘기하지 말고, 예방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하는 차원이예요.

앞으로는 책임감을 가지시고, 오염물질이 좀 덜 배출할 수 있도록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鍾來; 더 질의할 委員,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서울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간 아황산가스나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등은 환경기준치를 규정을 제정해서 규제를 가했습니다만 오존생성의 주범인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규정이 없어서 이번에 배출기준을 규정하도록 이 조례안을 상정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다른 문제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2004년까지 유예기간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의견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金鎬一 委員; 여기서 토론회를 해서 하지요.

○委員長 金鍾來; 그런데 집행부 답변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방금 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만 2004년까지 유예기간은 당인리발전소의 현실적인 문제, 그 다음에 당인리발전소 문제를 金恩京 委員님께서 폐쇄된 업체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을 달아서 유예조치를 취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도 계셨고, 또 그 안에 다른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외국기계가 도입되어서 하는데 우리 나라도 새롭게 기계를 만들어서 보급하려는 입장에 아직 2004년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金恩京 委員님, 이것을 조정하면 좋겠습니까?

○金恩京 委員; 네, 의견조정을 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鍾來;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갖고자 합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18時 57分 會議中止)

(19時 07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鍾來;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정회 중에 우리 委員님들이 토론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정리 했는데 金恩京 委員께서는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을 2004년이 아닌 2003년으로 앞당기자 라는 案이 제출되었습니다만 다른 委員님들께서는 원안대로 2004년까지 시행하는 것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면 서울特別市大氣汚染物質排出許容基準條例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特別市大氣汚染物質排出許容基準條例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서울特別市大氣汚染物質排出許容基準條例案

(뒤에 실음)

.....

○委員長 金鍾來;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委員님들과 環境管理室長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서울特別市長을 대리하여 李弼坤 行政1副市長이 출

석할 예정이며, 의사일정은 서울特別市生命의나무1000萬그루  
심기諮問委員會條例案 심사와 99년도 環境管理室 所管 環境  
綠地分野 業務報告 件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  
니다.

(議事棒 3打)

(19時 09分 散會)

---

○出席委員

金鍾來 金在實 金鎬一 金寬洙  
金恩京 金判吉 金興植 朴來雨  
宋美花 柳辰永 李成浩 車星煥  
金基星 李聲九 李松竹

○專門委員

金南中

○出席公務員

環境管理室長 都明正